

제11장

경쟁

제1절

경쟁

제11.1조

원칙

1. 양 당사국은 그들의 무역관계에서 자유롭고 왜곡되지 아니한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상품, 서비스 및 설립에 무역 자유화 과정의 혜택이 반경쟁적 영업행위나 반경쟁적 거래에 의하여 제거되거나 철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의 경쟁법을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2. 양 당사국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경쟁 제한적 합의, 동조적 행위¹ 및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한 지배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기업 간 결합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경쟁법을 유지한다.

3. 양 당사국은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의 행위가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이 협정의 적절한 기능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가. 당사국의 전체 영역 또는 상당한 일부의 영역에서 경쟁의 금지, 제한 또는 왜곡을 그 목적 또는 효과로 하는 기업 간 합의, 기업단체의 결정 및 동조적 행위

나. 당사국의 전체 영역 또는 상당한 일부의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한 지배적 지위의 남용, 또는

다. 당사국의 전체 영역 또는 상당한 일부의 영역에서 특히 지배적 지위의 형성 또는 강화의 결과로서 효과적인 경쟁을 중대하게 방해하는 기업 간 결합

¹ 동조적 행위에 대한 이 조의 적용은 각 당사국의 경쟁법에 의해 결정된다.

제11.2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영국의 경우, 「1998년 경쟁법(제41장)」과 「2002년 기업법(제40장)」 제3부 및 제6부, 제204절, 목록 7, 8 및 10, 그리고 때때로 개정된 그 규정들의 부속 법령
- 나. 대한민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그리고
- 다. 이 협정의 발효 후 이 조에 규정된 법령에 가해질 수 있는 변경사항

제11.3조

이행

1. 양 당사국은 제11.2조에 규정된 경쟁법의 이행을 담당하고 이를 위하여 적절하게 조직된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관련 당사자의 방어권을 존중하면서, 각국의 경쟁법을 투명하고 시의적절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요청하는 당사국에게 이 절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무와 관련된 자국의 경쟁법 집행 활동과 법령에 관한 공공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11.4조

공기업과 특별한 권리²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 받은 기업

² 특별한 권리는 당사국이 객관적, 비례적 그리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허가 받는 기업을 지정하거나 그 수를 둘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또는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

1. 공기업과 특별한 권리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 받은 기업에 대하여,
 - 가. 어떠한 당사국도 제11.1조에 포함된 원칙에 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나. 양 당사국은 그러한 기업들이 제11.2조에 규정된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러한 원칙 및 경쟁법의 적용이 그 기업들에게 맡겨진 특정 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한다.
2.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기업에 특별한 권리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하거나, 또는 그러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1.5조

국가 독점

1. 각 당사국은 상품이 조달되고 판매되는 조건에 관한 어떠한 차별적 조치³도 양 당사국의 자연인 간 또는 법인 간에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상업적 성격의 국가 독점을 조정한다.
2.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국가 독점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조는 제9장(정부조달)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1.6조

협력

공하는 그 밖의 기업의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또는 규제적 우위를 기업에 부여하는 때에,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된다.

³ **차별적 조치**란 관련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규정된 내국민대우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더욱 제고하고 경쟁 증진과 반경쟁적 영업행위 또는 반경쟁적 거래의 축소를 통해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당국 간 협력과 조정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집행 협력, 통보, 협의 및 비밀 아닌 정보의 교환을 포함하여, 각국의 집행 정책에 관하여 그리고 경쟁법 집행에서 협력한다.

제11.7조
협의

1.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절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사안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자국의 요청에,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안이 양 당사국 간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다.
2.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절의 해석이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협의한다.
3. 협의 대상인 사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비밀이 아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11.8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

제2절

보조금

제11.9조

원칙

양 당사국은 보조금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 보조금에 의하여 야기된 경쟁의 왜곡을 경쟁법의 적용을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 구제하거나 제거하고, 그러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한다.

제11.10조

보조금의 정의 및 특정성

- 1. **보조금**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조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조치이다.
- 2. 보조금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의 의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정적이다. 보조금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의 의미에서 특정적인 경우에만 이 절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11.11조

금지보조금⁴⁵

다음의 보조금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의 조건에 따라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양 당사국의 국제무역⁶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금지된다.

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부채와 채무의 금액 또는 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한

⁴ 양 당사국은 이 조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수령되는 보조금에만 적용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⁵ 이 협정의 목적상,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제1항나호 및 이에 부속된 각주 2에 규정된 객관적인 기준 또는 조건에 따라 부여되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금은 이 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⁶ 양 당사국의 국제무역은 국내 및 수출시장 모두로 구성된다.

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떠한 제한 없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조제1항의 의미에서 특정 기업의 부채 또는 채무를 부담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합의에 따라 부여되는 보조금, 그리고

나. 지급불능 또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장기적인 생존 가능 상태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한 신뢰할 만한 구조조정 계획 없이, 그리고 지급불능 또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구조조정 비용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아니하면서, 그러한 기업에게 부여되는 보조금(대부 및 보증, 현금 무상교부, 자본 투입, 시장가격 미만의 자산 제공 또는 세금 감면 등). 이는 양 당사국이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청산 계획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오로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한정된 대부 보증 또는 대부의 형태로 일시적 유동성 지원을 통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호는 공공서비스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보조금과 석탄산업에 부여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12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보조금 분야에서 투명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특정적이고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 유형 및 분야별 분배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게 매년 통보한다. 통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부여되는 보조금의 목적, 형태, 금액 또는 예산, 그리고 가능한 경우 수령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한 통보는 다음해 12월 31일까지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송되거나 관련 정보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보조금 계획과 특정적인 보조금에 대한 특별한 개별사례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직업상 및 영업상의 비밀 요건에 의해 부과되는 제한을 고려하여 이 정보를 교환한다.

제11.13조
세계무역기구협정과 관계

이 절의 규정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해 부여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역구제를 적용하거나 분쟁해결을 제기하거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1.14조
감시 및 검토

양 당사국은 이 절에서 언급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사안을 무역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발효 후 2년마다 이 절의 이행에 대한 진전 상황을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제11.15조
적용범위

1. 제11.9조부터 제11.14조까지의 규정은 수산보조금,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과 관련된 보조금, 그리고 농업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그 밖의 보조금을 제외하고, 상품에 대한 보조금에 적용된다.
2. 양 당사국은 다자수준에서의 진전사항을 고려하여,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에 적용 가능한 규칙을 발전시키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 양 당사국은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에 관하여 최초의 견해 교환을 이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하기로 합의한다.